20세기초 방각소설의 변모양상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李 昶 憲

1. 緖 言
2. 「출판법」 시행 이전의 방각소설
3. 「출판법」 시행과 이에 따른 방각 소설의 변모
4. 結 言

1. 緖 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대표하는 문학 양식으로 등장한 소설은 허구로서의 담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당대의 모순을 직접 드러낼 수 있으며 아울러 미래에의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여타의 문학 양식에 비하여 당대인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소설이 독자층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방각업자가 마련한 것은 18세기의 일이었다. 방각에 의한 출판은 貰册家에 비하여 더 많은 자본이 들고, 보다 복잡한 영업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원고를 구하여 이를 목판에 새기도록 하고, 종이를 구입하여 인쇄를 하도록 하고, 책의 형태로 제본을 하도록 하고, 완성된 상품의 형태로 출판된 소설책을 판매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일정한 이윤을 추구하는 이들이 방각업자들이다. 이때 어떠한 소설을 인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온전히 방각업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근저에는 이들 작업에 투자한 비용의 온전한 회수와 일정한 이윤의 보장이라는 요소가 자리잡고 있었다.(1) 그러나 이들 요소는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77), p.412—3.

판단해야 하는 요소라는 점에 있어서 방각업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였다.

현전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방각소설의 간행 양상을 살펴보면, 18세기 말부터 방각소설의 간행이 시작되었으며,(2) 19세기 중반에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각소설로 간행되어 독자층으로부터 대대적인 인기를 얻은 작품은, 투자비용의 온전한 회수와 일정한 이윤의 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각업자들에 의하여 중복 출판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또한 방각소설 역시 시장에서의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방각업자들 역시 나름대로의 적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한 권을 구성하는 장수가 차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현재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출판된 방각소설을 정리하면 모두 52종의 소설이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이 가운데에는 단 1회만 방각소설로 출판된 것도 있는데, 이는 현전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방각 시기가 비교적 늦어 방각이라는 방식으로 중복 출판하기보다는 활판 인쇄의 방식으

(2) 낙장본인 『임경업전』의 卷尾에 판각된 간기인 '歲庚子孟冬京畿開板'의 庚子年이 1780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18세기의 방각소설 자료라 할 수 있다. 李昶憲, 『京板坊刻小說 板本硏究』 (서울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pp.126-43 참조.

(3) 이들 작품의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운몽, 금방울전, 금향정기, 남정팔난기, 당태종전, 백학선전, 사씨남정기, 삼국지, 삼설기(금수전은 삼설기에 수록된 단편 두 작품만을 독립시켜 인행한 것이기에 삼설기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설인귀전, 소대성전, 숙영낭자전, 숙향전, 심청전, 쌍주기연, 양풍전(양풍운전이라는 제목으로 인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양풍전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용문전, 월봉기, 임장군전(임경업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것이 있으나 임장군전이라 간행한 판종이 대다수이기에 임장군전을 표제로 삼는다.), 임진록, 장경전, 장풍운전, 장화홍련전, 전운치전(전우치전이라고도 칭하고 있으나 방각소설에는 전우치전이 보이지 않으며 활판본 간행에 있어서 전우치전이라는 명칭이 나온다. 전운치전이라는 작품이 전우치전이라는 작품으로 표제를 달리하면서 활판본으로 간행하게 된 저간의 사정은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정수정전, 제마무전, 조웅전, 진대방전, 춘향전, 홍길동전, 황운전, 흥부전. (이상 32종은 현재 2종류 이상의 판본이 남아있는 작품이다.) 강태공전, 곽분양전, 김원전, 김홍전, 도원결의록, 서유기, 수호지, 신미록, 양산백전, 옥주호연, 울지경덕전, 월왕전, 이해룡전, 장백전, 장자방전, 장한절효기, 적성의전, 징세비태록, 토생전, 현수문전. (이상 20종은 현재 1종류의 판본만이 남아 있는 작품이다).

로 중복 출판하게 된 결과일 수 있으며, 또한 작품에 대한 당대 독자층의 무관심 때문에 중복 출판이 지닐 수 있는 상품으로의 가치가 없다는 방각업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19세기 말에 새로 도입한 새로운 인쇄기술 곧 납활자에 의한 활판 인쇄라는 방식을 이용한 소설의 출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활판에 의한 인쇄 대신 방각에 의한 인쇄가 여전히 주종을 이루었던 이유는 소설책 내지는 이야기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방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규모의 영세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기존에 이미 방각의 방식으로 간행된 바 있는 소설들을 활판의 방식으로 거듭 간행하고 있는 현상은, 이미 근대문학으로서의 소설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각의 형태로 간행된 적이 있는 소설들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들에 대한 독자들의 끝없는 수요가 당대에 현존하고 있었음(5)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20세기에 갓 접어든 대한제국의 주된 목표가 근대적 독립국가의 건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당대의 실천적 과제가 반봉건과 반외세에 있다는 점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이때에 반외세는 곧 민족의식의 고취라는 점에 있어서 역사·전기물로서의 소설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으며, 반봉건은 봉건적 요소의 폭로와 비판이라는 점에 있어서 방각소설의 일

(4) 방각업자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였다는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다. 비교적 늦은 시기의 방각업자에 대한 언급이지만 "木版本小說은 15전, 木版을 刻하는데 1장에 20원이나 받았다 하는데, 小說 한권을 만드는데는 木版本의 경우 400여원이나 들었다"는 기록(崔喆, 「李朝小說 讀者에 關한 硏究」(『연세어문학』 6, 1975) p.26 n. 47)을 고려한다면 2,700부 정도를 판매해야만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많은 부수를 판매해야만 방각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의 쌀 한가마가 4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시에 두 작품 이상을 판각할 수 있는 방각업자는 비교적 큰 규모의 방각업자였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李昶憲, 「고전소설의 유통 양상에 대한 일 고찰」, 『韓國敍事文學史의 硏究』 (中央文化社, 1995), pp.1716-8 참조.

(5) 1925년의 출판 통계에 따르면 신소설의 출판 허가 건수가 246건임에 비하여 구소설의 출판 허가 건수가 410건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정한 역할을 생각할 수 있다.(6) 물론 봉건적 요소의 폭로와 비판이라 점에 있어서는 방각본으로 간행된 고전소설보다는 이를 개작한 고전소설 또는 신작 고전소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쉬웠을 것이며, 고전소설보다는 신소설이, 그리고 신소설보다는 근대소설이 오히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독서층은 여전히 근대소설보다는 신소설을 그리고 신소설보다는 고전소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7)

더군다나 이 시기에 있어서 활발하게 전개된 애국계몽운동이 언론과 출판 그리고 교육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통감부의 대응은 법적인 강제라는 틀을 통한 철저한 억압과 간섭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문지법」, 「출판법」, 「학회령」, 「교과용도서검정규정」 등이다. 특히 도서의 출판과 관련하여서는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통한 규제와 「출판법」에 의한 규제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통한 규제가 비교적 한정된 범위의 도서만을 대상으로 삼은 규제였다고 한다면, 「출판법」에 의한 규제는 모든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든 도서가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출판법」에 의하여 규제하려 하였던 주된 대상에 방각소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각소설은 「출판법」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약은 상호 경쟁 관계에 놓여 있던 활판본

(6) 이 점에 있어서 방각소설의 역할은 방각소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성격을 지닌 고전소설 전반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특히 방각소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시장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하나의 상품이라는 형태로 생산되었다는 점, 다른 어떠한 목적보다 우선하여 경제적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생산되었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 여타의 출판물과 구분되는 방각본 출판물만의 독특한 성격을 알 수 있다 하겠다.

(7) 이러한 점은 고전소설을 출판한 서점들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 비하여 근대적인 문학전집을 기획하여 출판한 서점이 몰락하고 있는 현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흔히 "대중화논쟁"이라 지칭하고 있는 일련의 논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독자층의 성향에 대한 언급은 출판계에 있어서 고전소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소설에 비하여 방각소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출판법」 시행 이전의 방각소설

「출판법」 시행 이전의 방각소설의 간행 양상을 현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새로운 방각소설의 간행이 거듭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1905년에 방각된 『정수정전』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끝에 '大韓光武九年仲秋蛤洞新刊'이라는 간기를 뚜렷하게 남기고 있어, '大韓光武九年' 곧 1905년에 『정수정전』 〈16장본〉[8]을 '蛤洞'이라는 坊刻所에서 출판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수정전』은 이것 이외에 2종의 판본이 더 있는데, 하나는 방각소 미상의 『정수정전』 〈17장본〉(16½장)[9]이며, 다른 하나는 간기는 없으나 翰南書林의 版權紙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정수정전』 〈16장본B〉[10](이를 합동에서 간행한 〈16장본〉과 구분하기 위하여 〈16장

(8) 〈16장본〉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뎡슈졍젼 권지단'으로 나타난다. 매면 15행(1장-11장) 또는 16행(12장-16장)의 체재로 판각하고, 상하내향흑어미 또는 상흑어미(3장-4장, 11장-13장)의 모습을 보인다. 판심제는 '뎡'으로 상백구 어미 바로 윗부분에 위치하며, 작품서술은 제16장 후엽 10행에서 끝나고 있다. 남은 여백에 본문보다 큰 글씨로 '大韓光武九年仲秋蛤洞新刊'이라는 간기를 새겼다. 金東旭編,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三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pp.51-8에 영인되어 있으며, 원본은 김동욱 소장본이다.

(9) 〈17장본〉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뎡슈졍젼 권지단'으로 나타난다. 매면 15행의 체재로 판각하고, 상하내향흑어미의 모습을 보인다. 판심제는 '뎡'으로 상백구에 위치하며, 작품서술은 제17장 전엽 13행에서 끝나고 있다. 남은 부분은 여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간기는 없다. 위의 책, pp.59-67에 영인되어 있으며, 원본은 오한근 소장본이다.

(10) 〈16장본B〉의 권수제 및 권차표시는 '뎡슈졍젼 권지단'으로 나타난다. 매면 15행(1장-11장) 또는 16행(12장-16장)의 체재로 판각하고, 상흑어미 또는 상하내향흑어미(14장-15장)의 모습을 보인다. 판심제는 '뎡'으로 상백구의 어미 바로 윗부분에 위치하며, 작품서술은 제16장 후엽 10행에서 끝나고 있다. 남은 여백에 6개의 계선이 있으며, 간기는 없다.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硏究院編, 『韓國古代小說叢書』 第一 (通文館, 1960), pp.389-420. 동일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한48-67)에 소장되어 있는데, 인쇄자가 조명천으로 되어 있는 한남서림의 판권지가 붙어 있다.

본B〉라고 칭한다)이다.

이들 3종류의 『정수정전』 판본 사이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행문을 일부 대조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특히 판식이 바뀌는 부분인 제11장 뒷부분과 제12장 앞부분의 행문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17장본〉[11]/(13)(상략) ᄎᆞ셜 이ᄯᅢ는 삼츔가졀이라 뎡/(14)휘 시비 등을 다리고 후원의 드러가 풍경ᄒᆞ더니 부용각의 이르니 장후의 홍/(15)희 영츈이 부용각 연못가의 거러안ᄌᆞ 발을 물의 담으고 무릅 우히 단금//(1)을 안져 곡죠를 희롱ᄒᆞ며 졍후를 보고 요동치 아니ᄒᆞ는지라 졍휘 ᄃᆡ로ᄒᆞ/(2)여 ᄭᅮ지져 왈 공후장상이라도 나를 감히 만모치 못ᄒᆞ려든 너갓튼 쳔네 엇지 /(3)나를 보고 요동치 아니ᄒᆞ는다 ᄒᆞ고 즉시 도라와 환관을 벗고 융복을 갓쵼 흐 /(4)진시화를 불너 영츈을 잡아오라 ᄒᆞ여 ᄃᆡ하의 ᄭᅮᆯ닌ᄃᆡ 뎡휘 ᄭᅮ지져 왈 네 군/(5)후에 춍을 밋고 방ᄌᆞ무지ᄒᆞ여 쥬모를 만모ᄒᆞ니 그 죄 가히 머리를 버혀 타인/(6)을 징계헐 거시로ᄃᆡ 쥬군의 낫출 보와 약간 경칙ᄒᆞ노라 ᄒᆞ고 결곤이십도ᄒᆞ/(7)여 너치고 침실노 도라오니 ᄉᆞᄯᅢ 틱부인이 뎡후의 거오ᄒᆞ믈 미안이ᄒᆞ여 ᄒᆞ든 ᄎᆞ의 /(8)이를 듯고 ᄃᆡ로ᄒᆞ여 장후를 불너 왈 영츈이 비록 유죄ᄒᆞ나 ᄉᆞ의 신임ᄒᆞ는 /(9)비ᄌᆞ여놀 뎡휘 너게 품치 아니ᄒᆞ고 임의로 치죄ᄒᆞ니 엇지 네 졔가ᄒᆞ는 법되라 ᄒᆞ/(10)리오 장휘 돈슈ᄉᆞ죄ᄒᆞ고 외당의 나와 뎡후의 시비를 잡아다가 슈죄ᄒᆞ여 뎡/(11)후의 죄로 마즈라 ᄒᆞ고 결장ᄒᆞ여 너치니 뎡휘 가장 불쾌이 역이더라 화셜/

〈16장본〉[12]/(13)(상략) ᄎᆞ셜 이ᄯᅢ는 삼츔가졀이라 뎡/(14)휘 시비 등을 다리고 후원의 드러가 풍경ᄒᆞ더니 부용각의 이르니 장후의 춍/(15)희 영츈이 부용각 연못가의 거러안ᄌᆞ 발을 물의 담으고 무릅 우히 단구//(1)을 인져 곡죠를 희롱ᄒᆞ며 졍후를 보고 요동치 아니ᄒᆞ는지라 졍휘 ᄃᆡ로ᄒᆞ여 ᄭᅮ/(2)지져 왈 공후장상이라도 나를 감히 만모치 못ᄒᆞ려든 너갓튼 쳔네 잇지 나를 보고 /(3)요동치 아니ᄒᆞ는다 ᄒᆞ고 즉시 도라와 환관을 벗고 융복을 갓쵼 후 진시화를 불/(4)너 영츈을 잡아오라 ᄒᆞ어 ᄃᆡ하의 ᄭᅮᆯ닌ᄃᆡ 뎡휘 ᄭᅮ지져 왈 네 군후에 춍을 밋고 방/(5)ᄌᆞ무지ᄒᆞ여 쥬모를 만모ᄒᆞ니 그 죄 가히 머리를 버허 타인을 장계헐 거시로ᄃᆡ 쥬/(6)군의 낫출 보와 약간 경칙ᄒᆞ노라 ᄒᆞ고 결곤이십도ᄒᆞ여 너치고 침실노 도라오니 ᄉᆞᄯᅢ /(7)틱부인이 뎡후의 거오ᄒᆞ믈 미안이ᄒᆞ여 ᄒᆞ든 ᄎᆞ의 이를 듯고 ᄃᆡ로ᄒᆞ여 장후를 불너 /(8)왈 영츈이 비록 유죄ᄒᆞ나 ᄉᆞ의 신임ᄒᆞ는 비ᄌᆞ여놀 뎡휘 너게 품치

(11) 金東旭編, 앞의 책, p.64. 인용문에서 사용한 /은 행을 구분한 것이며, //은 면을 구분한 것이다. ( ) 안의 번호는 행의 번호를 표시한 것이며, ᄉᆞ은 앞의 글자와 같다는 것을 표시한 오리문자이다. 밑줄은 〈16장본〉과 비교하여 행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이하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12) 위의 책, p.56.

아니ᄒᆞ고 임/(9)의로 치죄ᄒᆞ니 엇지 네 졔가ᄒᆞ는 법되라 ᄒᆞ리오 장휘 돈슈ᄉᆞ죄ᄒᆞ고 외당의 나와 뎡/(10)후의 시비를 잡아다가 슈죄ᄒᆞ여 뎡후의 죄로 마즈라 ᄒᆞ고 결장ᄒᆞ여 너치니 뎡휘 /(11)가장 불쾌이 역이더라 화셜 (하략)

〈16장본B〉[13]/(13)(상략) ᄎᆞ셜 이ᄯᅢ는 삼츈가졀이라 뎡/(14)휘 시비 등을 다리고 후원의 드러가 풍경ᄒᆞ더니 부용각의 이르니 강후의 총/(15)희 영츈이 부용각 연못가의 거러안ᄌᆞ 발을 물의 담으고 무릅 우히 단구//(1)을 언져 곡죠를 희롱ᄒᆞ며 졍후를 보고 요동치 아니ᄒᆞ는지라 졍휘 ᄃᆡ로ᄒᆞ여 ᄭᅮ/(2)지져 왈 공후장상이라도 나를 감히 만모치 못ᄒᆞ려든 너갓튼 쳔녜 잇지 나를 보고 /(3)요동치 아니ᄒᆞ는다 ᄒᆞ고 즉시 도라와 환관을 벗고 융복을 갓촌 후 진시화를 불/(4)너 영츈을 잡아오라 ᄒᆞ여 더하의 쑬닌ᄃᆡ 뎡휘 ᄭᅮ지져 왈 네 군후에 총을 밋고 방/(5)조무지ᄒᆞ여 쥬모를 만모ᄒᆞ니 그 죄 가히 머리를 버혀 타인을 장계헐 거시로ᄃᆡ 쥬/(6)군의 낫출 보와 약간 경칙ᄒᆞ노라 ᄒᆞ고 결곤이십도ᄒᆞ여 너치고 침실노 도라오니 ᄉᆞ씨/(7)티부인이 뎡후의 거오ᄒᆞ믈 미안이ᄒᆞ여 ᄒᆞ든 ᄎᆞ의 이를 듯고 ᄃᆡ로ᄒᆞ여 장후를 불너 /(8)왈 영츈이 비록 유죠ᄒᆞ나 ᄉᆞ의 신임ᄒᆞ는 비ᄉᆞ여놀 뎡휘 너게 품치 아니ᄒᆞ고 임/(9)의로 치죄ᄒᆞ니 엇지 네 졔가ᄒᆞ는 법되라 ᄒᆞ리오 장휘 돈슈ᄉᆞ죄ᄒᆞ고 외당의 나와 뎡/(10)후의 시비를 잡아다가 슈죄ᄒᆞ여 뎡후의 죄로 마즈라 ᄒᆞ고 결장ᄒᆞ여 너치니 뎡휘 /(11)가장 불쾌이 역이더라 화셜 (하략)

위의 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17장본〉과 〈16장본〉의 서술 내용은 동일하다. 오각으로 인한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를 제외한다면 양본은 동일한 내용을 판식을 달리하여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작품의 끝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16장본〉의 제12장 이하의 행문은 〈17장본〉의 행문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는 것이다. 〈16장본〉은 제12장 이하에서 반엽 15행의 체재가 아닌 반엽 16행의 체재를 마련하고, 매행에 들어가는 글자 수를 늘림으로써 〈17장본〉의 내용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전체 장수를 17장에서 16장으로 줄인 것이라 하겠다.[14] 이러한 노력은 종이 자체의 절약뿐만 아니라 手作業에 의한 인쇄 공정을 줄인다는 점

(13) 梨花女子大學校韓國文化硏究院編, 앞의 책, pp.410-1.

(14) 장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었음은 冊價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紙價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비록 늦은 시기의 기록이지만 1922년 坊刻本『奎章全韻』의 판권지에서 書目을 나열하고 나서 冊 價格은 白紙時勢의 高低를 隨하여 一定하지 아니하기에 記載하지 못한다고 附記하고 있다는 점에서 用紙의 時勢에 맞추어 冊價가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安春根,「坊刻本論攷」(『書誌學』創刊號, 1968), p.18 참조.

에 있어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16장본〉은 〈17장본〉의 제1장 이하 제11장까지를 가져다가 판하본으로 삼아 번각하고, 제12장 이하는 반엽 16행이라는 새로운 판식을 활용하여 장수를 한 장 줄이는 방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새롭게 필사, 개각한 것이다.

결국 〈17장본〉을 모본으로 삼아서 성립한 것이 〈16장본〉이라는 점에서, '蛤洞'에서 〈16장본〉을 간행한 1905년 이전에 다른 방각소에서 이미 〈17장본〉을 판각하여 판매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蛤洞'에서 간행한 〈16장본〉을 가져다가 그대로 판하본으로 삼아 번각한 것이 '翰南書林'의 판권지가 붙은 〈16장본B〉에 해당한다. 〈17장본〉의 실질적인 장수가 16½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17장본〉 〈16장본〉 〈16장본B〉는 거의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6장본B〉의 말미에 한남서림에서 발행하였다는 판권지가 첨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판법」 시행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한남서림이 방각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출판법」 시행 이전의 방각소 명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불명확하다---역시 가능하다.

이러한 추정은 한남서림의 판권지가 붙어 있는 『춘향전』〈16장본〉이 이에 선행하는 『춘향전』 〈16장본〉을 판하본으로 삼아 번각한 것이라는 점, 『숙영낭자전』 〈16장본〉 역시 이에 선행하는 『숙영낭자전』 〈16장본〉을 판하본으로 삼아 번각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구운몽』 〈32장본〉 역시 이에 선행하는 '孝橋'라는 방각소에서 간행한 『구운몽』 〈32장본〉을 판하본으로 삼아 번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특히 방각소설의 경우 후대본일수록 각권을 구성하는 작품의 장수가 점차 줄어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6장 내지 17장으로 방각된 소설들은 대개 20세기에 접어들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판각하였을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1909년의 「출판법」 시행 이전까지는 분명 소설의 새로운 방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겠다.

참고로 16장 내지 19장의 장수로 각권이 구성된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5]

금방울전(16장본) 남정팔난기(일17장본*, 이17장본*) 당태종전(18장본) 도원결의록(하17장본) 삼설기(상17장본*, 이18장본*, 삼18장본*) 설인귀전(상17장본*) 소대성전(16장본) 숙영낭자본(16장본, 16장본) 쌍주기연(16장본) 월왕전(하19장본*) 임장군전(17장본, 16장본) 장경전(16장본) 장풍운전(19장본*) 장화홍년전(18장본 : 자암, 18장본 : 송동) 전운치전(17장본) 정수정전(17장본, 16장본 : 합동, 16장본) 조웅전(17장본, 16장본) 진대방전(16장본) 춘향전(17장본, 16장본, 16장본) 토생전(16장본*) 황운전(일15장본, 이16장본)

또한 '紫岩'이라는 방각소에서 간행한 『장화홍년전』〈18장본〉 역시 20세기에 접어들어서 판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암'에서 간행한 『草千字』〈17장본〉의 말미에 '大韓光武九年九月日紫岩新刊'이라는 간기가 있는데, 이는 1905년에 '자암'에서 여전히 방각본을 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울러 방각소설을 함께 간행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화홍년전』〈18장본〉의 방각이 20세기에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20세기 초까지 방각활동을 계속하였을 방각소를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전 방각본 가운데 有刊記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유간기본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방각소에서 마지막으로 방각한 자료를 살피면 紅樹洞(1861년 : 신미록), 銅峴(1870년 : 五言唐音), 書坊(1879년 : 童蒙先習), 由洞(1885년 : 史略), 美洞(1885년 : 方藥合編), 冶洞(1887년 : 御定奎章全韻), 布洞(1890년 : 임장군전), 武橋(1894년 : 임진록), 龍洞(1898년 : 御定奎章全韻), 紫岩(1905년 : 草千字), 蛤洞(1905년 : 정수정전)에서 방각본의 간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이 점에서 본다면 布洞, 武橋, 龍洞, 紫岩, 蛤洞 등의 방각소는 20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방각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15) *은 기존의 판목 자체를 활용하면서 판각하여 인행한 것, 밑줄은 한남서림의 판권지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16) 『御定奎章全韻』의 경우 여기에서 언급한 것보다 一周甲 더 앞설 수 있다. 이는 방각으로 간행된 『御定奎章全韻』 전체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이를 간행한 방각소의 방각 활동 시기와 관련하여 표시하였다.

3.「출판법」의 시행과 이에 따른 방각소설의 변모

光武年間인 1909년 2월 23일에 반포된「出版法」에서는 '機械와 其他如何方法을 勿論ᄒᆞ고 發賣 又ᄂᆞᆫ 頒布로 目的삼ᄂᆞᆫ 文書와 圖書를 印刷ᄒᆞᆷ을 出版(1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7] 이때 其他如何方法에 해당하는 출판물의 하나에 방각소설이 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는 방각소설 역시「출판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1909년의「출판법」시행은 어떠한 형태로이건 방각업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하겠다. 더군다나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文書圖書의 發行者ᄂᆞᆫ 文書圖書ᄅᆞᆯ 販賣ᄒᆞᆷ으로 營業삼ᄂᆞᆫ 者에만 限ᄒᆞᆷ'이라는 조건(예외적으로 저작자가 발행자를 겸할 수 있도록 함)은 이들 방각업자들에게 일정한 곳에서 매장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판각만을 담당하고 있던 刻手들은 별도로 독립된 인쇄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발행자에게 직접 예속되는 형태를 취하여야만 하였다. 더군다나「출판법」은 인쇄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등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인쇄자 자신의 성명, 주소, 인쇄소, 인쇄년월일을 기재하고 인쇄한 문서 및 도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발행자와 동일한 처벌을 명시하여 인쇄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출판법」에서는 저작자·발행자·인쇄자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자와 발행자가 連印하여 稿本을 첨부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고, 출판 이후에는 製本 2部를 納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과 사후 검열이라는 이중의 구속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서·도서의 말미에 발행자와 인쇄자의 성명과 주소, 발행소, 인쇄소, 발행·인쇄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본 2부의 납부 이후에도 언제든지 도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쉽게 추적하여 도서를 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구속력을 지녔다 하겠다.

(17)「法律 第六號」,『官報』四千三百十一號, 1909. 2. 26.

따라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판하고자 하는 책마다 출판 허가를 얻어야 하며, 출판된 도서가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壞亂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도서의 발매 및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출판법」 시행 이전에 이미 출판된 도서를 再版---이때의 재판은 수정·개정뿐만이 아니라 쇄를 달리하여 출판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하고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판법」 시행 이전에 이미 출판되어 발매 및 반포 중인 도서 자체에 대하여도 발매 및 반포를 금지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에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191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금서와 관련된 조치이다.[18] 이는 이미 출판되어 발매 중인 도서 51종(총65책)에 대해 「출판법」 12조(외국인 저서에 대한 적용)와 16조(기출판 도서에 대한 소급 적용)에 의하여 安寧秩序를 妨害한다는 이유로 금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따라서 방각업자들 역시 방각소설의 간행을 위해서는 매번 「출판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와 제본 납부를 반복하여야만 하였으며, 이러한 흔적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방각소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남서림의 판권지를 첨부한 『삼국지』를 예로 들면,[19] 표지에 대정 9년(1920년) 9월 2일에 제133호로 납본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권수제 아래의 여백에 '朝鮮總督府保轉本'이라는 도장까지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

결국 「출판법」의 시행에 있어서 허가는 출판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하는 도서 한권 한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사전 검열을 통한 허가와 제본의 납부라는 사후 검열을 통한 통제라는 이중의 규제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출판법」의 시행에 따라서 이후에 출판되는 모든 도서들은 판권지

(18)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告示 第七十二號」, 『朝鮮總督府官報』 69號, 1910.11.19.

(19)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분류기호 '한48-33'으로 된 3권 3책의 완질본과 '한48-33-2'로 된 2권 2책의 낙질본이 있다.

(20) 이점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출판법에 따른 납본 관련 문헌 목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현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를 말미에 첨부하여야만 하였다. 현재 확인이 가능한 방각본의 판권지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書店名	編輯兼發行者	印刷者	印刷·發行年月日
新舊書林	池松旭	殷泰聖	大正二年八月十五日 印刷
京城南部紫岩洞	京城南部紫岩洞	京城南部醬洞	1913
四十二統十戶	四十二統十戶	五十五統六戶	大正二年八月二一日 發行
紙物書舖	李鍾星	曺春和	大正二年八月二十日 印刷
京城南部紫岩洞	京城南部紫岩洞	京城西部涼洞	1913
九十九統八戶	九十九統八戶	五十三統九戶	大正二年八月二十五日 發行
匯東書舘	高裕相	辛有植	大正七年二月六日 印刷
京城府南大門通	京城府南大門通	京城府臥龍洞	1918
一丁目十七番地	一丁目十七番地	十四番地	大正七年二月二十日 發行
翰南書林	白斗鏞	曺命天	大正ㅗ年 月二十五日 印刷
京城府仁寺洞	京城府仁寺洞	京城府堅志洞	1917?
百七十番地	百七十番地	二十一番地	大正ㅗ年 月三十日 發行
翰南書林	白斗鏞	曺命天	大正 年 月二十五日 印刷
京城府仁寺洞	京城府寬勳洞	京城府堅志洞	
百七十番地	十八番地	二十一番地	大正 年 月三十日 發行
翰南書林	白斗鏞	金鉉秀	印刷
京城府寬勳洞	京城府寬勳洞	高陽郡龍江面	
十八番地	十八番地	五百四十番地	發行
北村書舖	朴星七	安萬浩	明治四十五年七月 日 印刷
京畿道安城郡	京畿道安城郡	京畿道安城郡	1912
其佐面本里	其佐面本里	其佐面本里	明治四十五年七月 日 發行
朴星七書店	朴星七	芮一成	大正六年十一月 十 日 印刷
京畿道安城郡	京畿道安城郡	京畿道安城郡	1917
寶盖面其佐里	寶盖面其佐里	寶盖面其佐里	
四百六十一番地	四百六十一番地	三百九十三番地	大正六年十一月二十一日 發行
太華書舘	姜夏馨	辛有植	大正十二年十一月五日 印刷
京城府鍾路三丁	京城府鍾路三丁	京城府鍾路三丁	1923
目八十五番地	目八十五番地	目八十五番地	大正十二年十一月十日 發行

이 가운데 방각소설을 취급한 곳은 朴星七의 北村書舖와 朴星七書店, 白斗鏞의 翰南書林, 姜夏馨의 太華書舘 등이다. 한남서림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종류의 완결된 판권지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시로 재판에 해당하는 인쇄를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한남서림의 경우는 발행년월일을 기록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처리하여 여기에 도장을 찍거나 펜으로 써넣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912년에 출판 허가를 받은 북촌서포의 경우, 1917년 인쇄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출판 허가를 다시 받을 때, 행정구역의 개편(1914년에 있었다)으로 인한 지명의 변경뿐만 아니라 발행소의 명칭까지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고 판권지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로서 허가를 받고 납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하려는 도서를 단위로 하여 출판 허가를 받고 납본을 하여야 한다는 「출판법」의 규제는 결국 새로운 소설을 방각하여 인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없게 하였으며, 결국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판목을 활용하여 재판만을 거듭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판목을 가지고 再版을 거듭하는 것 역시 1회 재판에 의해 인쇄할 수 있는 부수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출판법」 규정 아래에서는 매우 열악한 출판 조건에 놓이게 됨을 의미하며, 활판본 소설에 비하면 그 비효율성이 더욱 크게 부각된다 하겠다.

방각의 형태에 의한 출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곧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출판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기능하게 됨에 따라서 방각소설은 더욱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하겠다. 더군다나 冊價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인 紙價와의 관계에서 살필 때에도, 동일한 지면에 담는 서술의 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방각소설은 활판본 소설에 비하여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독자들의 글자 판독의 용이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방각소설의 글자 모양보다는 활판본 소설의 글자 모양이 판독하기에 더욱 용이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사정은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는 결국 방각소설이 수행하고 있던 모든 기능을 활판본(구활자본)소설

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에 있어서 『不老草』(유일서관, 1912.8.19.)나 『옥중화』(박문서관, 1912.8.27)의 간행이 방각본의 형태가 아닌 활판본(구활자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1912년 이후, 방각본의 형태로 이미 간행된 소설이 활판본의 형태로 거듭 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데,(21) 이 가운데 몇몇 작품은 활판본으로 간행된 것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원인이 출판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당대에 해당 작품의 독자층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출판업자들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처럼 방각본으로는 간행되었지만 활판본으로는 간행되지 아니한 작품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김홍전』, 『월왕전』, 『이해룡전』, 『임진록』, 『징세비태록』, 『황운전』

이 가운데 『월왕전』은 이전에 방각본의 형태로 거듭 간행되었고, 「출판법」 시행 이후에도 한남서림에 의해 출판 허가를 얻어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활판본으로 간행하기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출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출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해룡전』은 유일 서관본으로 간행되었다는 언급이 있으나,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임진록』의 경우 방각본으로서는 물론이려니와 활판본으로의 간행 허가를 받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남은 작품인 『김홍전』, 『징세비태록』, 『황운전』 등은 활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현전하는 활판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출판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출판업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작품이라 하겠다.

(21) 활판본소설의 간행 목록은 權純肯, 『1910년대 活字本 古小說 硏究』 (成均館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의 부록 「활자본 고소설의 연도별 출판목록」을 참조할 것.

끝으로 「출판법」 시행 직후의 자료는 아니지만 〈조선인 발행 단행출판물 출판허가 건수〉 가운데 구소설과 신소설의 허가 건수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2)

구분 / 년도	구소설					신소설					비고
	출원	허가	삭제	불허가	취하	출원	허가	삭제	불허가	취하	
1925		410					246				
1929	26	26		0	0	108	100		5	3*	*익년
1930		73					31				이월
1931		71					111				
1932		65					123				
1933		139					49				
1934		44					55				
1935		49					77				
1936		79					105				
1937		105					138				
1938		40					73				
1939	15	14	1	0	1	98	87	3	2	9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소설과 신소설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로 농민·부녀자가 이들 출판물의 주된 구독자이며, 출판허가 건수의 상당수가 주로 농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 허가를 받은 출판물에 대한 통제의 방식으로 출판용지인 종이를 통제하겠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출판 허가를 받은 서적 역시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출판하는 것이 어려웠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소설의 출판허가 건수에는 방각의 형태로 간행하는 경우보다는 활판본의 형태로 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이기에 정확히 언제까지 방각의 형태로 소설이 인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

(22) 이는 『昭和五年 朝鮮に 於ける 出版物概要』(朝鮮總督府警務局, 1930)와 『昭和十四年 中に 於ける 朝鮮出版警察概要』(朝鮮總督府警務局圖書課, 1940)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

다. 특이한 것은 1939년에 1건의 삭제에 의한 출판 허가가 있다는 점이며, 1건의 취하는 다음해로 이월한 것으로 추정된다. 1건의 삭제가 이루어진 구소설이 방각의 형태로 출판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활판본의 형태로 출판되는 것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이 가능하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는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4. 結　　言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도 새로운 작품을 거듭 방각본의 형태로 판각하여 인출할 수 있었던 방각소설은 1909년 「출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급격한 몰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再版을 거듭할 때마다 「출판법」의 규정대로 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판법」의 시행 이후 방각소설의 간행은 새로운 작품의 인행보다는 기존의 판목을 이용한 재판에 겨우 머물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납활자를 사용하여 기계화된 방식으로 인쇄한 활판본 소설에게 그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방각소설의 인행 방식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작업에 의존하여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수만큼을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곧 「출판법」의 규정이 이러한 인출 방식을 오히려 구속하게 됨에 따라, 한번 인출에 많은 부수를 생산할 수 있는 활판본 소설의 생산 방식에 비하여 큰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어 차츰 경쟁력을 잃고 마침내 활판본 소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겨우 그 명맥만을 이어나간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1909년 「출판법」 시행 이후 1910년까지의 출판물에 대한 압수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안방해 또는 안녕질서 방해, 무허가출판이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나타난다.

1909. 7.10. 『勉庵先生文集』 6冊(卷之四, 五, 九, 十二, 十三, 十四, 十六)과 『勉庵先生文集附錄』 2冊(卷之一二, 卷之三四)을 治安 妨害(16조)를 이유로 압수

(著作者 : 崔永祚). (內部告示 第四一號, 官報 4427號, 1909.7.13.)

1909.10. 8.『東國文獻保有』卷之一, 卷之二, 卷之三을 許可를 受치 아니하고 出版(13조)한 이유로 압수. (內部告示 第七二號, 官報 4502號, 1909.10.11.)

1910. 4.15.『中等唱歌』全一册을 許可를 受치 아니하고 出版(13조)한 이유로 압수. (李聖植 著作) (內部告示 第三二號, 官報 4656號, 1910.4.19.)

1910. 4.20.『樂典教科書』全一册을 許可를 受치 아니하고 出版(13조)한 이유로 압수.(李基鐘 著作) (內部告示 第三八號, 官報 4660號, 1910.4.23.)

1910. 5. 7.『千歲曆』全一册을 許可를 受치 아니하고 出版(13조)한 이유로 압수. (內部告示 第四七號, 官報 4674號, 1910.5.10.)

1910. 9. 6.『兩義士合傳』을 治安 妨害(12조)를 이유로 압수. (統監督府警務總監部告示 第四十六號, 朝鮮總督府官報 15號, 1910.9.14.)

1910.10.26.『愛國同盟團勸義文』(문서)을 治安 妨害(12조)를 이유로 압수.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 第六十三號, 朝鮮總督府官報 52號, 1910.10.29.)

1910.11.19.『初等大韓歷史』등 51종(총65책)을 安寧秩序 妨害(12, 16조)를 이유로 압수.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 第七十二號, 朝鮮總督府官報 69號, 1910.11.19.)

『千歲曆』조차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하였다는 이유로 압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출판물에 대하여 예외 없이「출판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 방각소설의 출판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판권지를 살피면 가장 이른 시기의 판권지가 1912년(明治 45年 : 北村書舖)과 1913년(大正 2年 : 新舊書林, 紙物書舖)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출판법」의 시행이 1909년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사이 몇년간은 방각소설의 인출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 시기에 방각소설을 새롭게 판각하여서 인출하였다면「출판법」의 규정을 준수하던가---따라서 판권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아니면「출판법」위반으로 압수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각소설을 압수하였다는 기록은『官報』의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출판법」시행 이후에 방각소설을 새로 판각하여 인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판목을 사용하여 인출하는 것만이 용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판목을 사용하여 인출하는 것은「출판법」시행 이전에

한꺼번에 출판하여 「출판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발매·반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결국 「출판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판목을 사용한 인출이 계속 허용되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전 자료 가운데에는 「출판법」 시행 이전에 인출된 방각소설과 「출판법」 시행 이후에 판권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인출된 방각소설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각소설의 인출에 사용된 용지인 종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절실하다 하겠다.

또한 방각소설의 판권지가 출현한 1912년이라는 해가 최초의 활판본 소설이 출현한 1912년이라는 해와 공교롭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1912년에 대한 해명 역시 긴요한 과제라 하겠다.

(필자 :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